

농림축산식품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강서구

훈계대상자 ① 강서구 ○○과 지방○○○○○ ○○○

② 강서구 ○○과 지방○○○○○ ○○○

③ 강서구 ○○과 지방○○○○○ ○○○

④ 강서구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1. 1.부터 2015. 2. 1.까지, 지방○○○○○ ○○○은 2015. 2. 2.부터 2016. 2. 2.까지, 지방○○○○○ ○○○은 2016. 4. 1.부터 2016. 8. 9.까지, 지방○○○○○ ○○○은 2016. 9. 12.부터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강서구 ○○과에서 농업용 대형관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도(農道) 등 농로 포함),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

시설 등 영농시설이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농업용수는 준공신고 후 3년 주기로 1회 수질검사)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농업용 대형 관정에 대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및 시설관리를 수시로 점검하여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강서구에서는 관내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6개) 전체를 현장 확인한 결과 2001년도 관정을 설치한 이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한 번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정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도 방치된 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내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질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수리가 필요한 관정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 영농철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